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5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권영진·김정재·엄태영

이상휘 · 정점식 · 조지연

김상훈 · 김기웅 · 이만희

서천호 • 윤영석 • 김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 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 · 관리하기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_ 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_ 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